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337

발의연월일: 2021. 1. 13.

발 의 자:김회재·강준현·문진석

박상혁 • 박영순 • 소병훈

장경태 · 조승래 · 조오섭

조응천 • 진선미 • 최종윤

허 영 의원(13인)

제안이유

관광호텔 등은 과거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16. 12. 31. 폐지)을 근거로 용적률을 완화하여 건설된 경우가 다수 존재하며, 이를 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 주택의 용적률을 초과하는 면적에 대한 철거가 수반되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하는 상황임.

따라서, 주택용적률을 초과하는 건축물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도심 내 우량입지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함.

주요내용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해 공공주택사업자 매입 후 개량하는 주택 또는 매입약정을 체결한 자가 개량하는 주택에 대하여 기존주택 등의 용적률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안 제43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의 용적률 특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권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제43조제1항에 따라 기존주택등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또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주택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용적률 또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기존주택등의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기존주택등을 철거 후 신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43조의2(기존주택등 매입임대
	주택의 용적률 특례) 「주택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권자 또는 「건축법」 제1
	1조에 따른 허가권자는 공공주
	택사업자가 제43조제1항에 따
	라 기존주택등을 매입하여 공
	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또는 제4
	3조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
	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
	결한 주택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
	례로 정한 용적률 또는 지구단
	위계획에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기존주택등의 용적률
	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주택등을 철거 후 신축하는 경
	우는 제외한다.